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상 군



2023년 3월 28일

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79 호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

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신규채용) 제3항 단서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를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군포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로 한다.

제22조(직원의 승진) 중 “승진심사를 거쳐 사장이 임용한다.”를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한다.”로 한다.

제28조(근무성적 평정방법) 제4항 제1호 중 “휴직 또는 직위해제에 있

는 자”를 “휴직, 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근무성적 평정대상 기간 중 1개월 미만 근무한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경 영 지 원 부
입 안 자	직 위 성 명	경 영 지 원 부 장 곽 성 우
	직 위 성 명	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
	담당자 성명 (전 화)	현 진 환 (3 9 0 - 7 6 0 9)

참고사항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개정안 전문(2022.11.24.)

○ (채용계획 변경공고 절차 수정) 규정 상 필수기구가 아닌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개정(공, 음)

※ 채용공고의 주요내용 변경 시, 채용계획 수립 시와 동일하게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도록 개정

현 행	개 정 안
<p>○ (생략)</p> <p>-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u>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u> 거쳐야 함</p>	<p>○ (현행과 같음)</p> <p>-----</p> <p>-----</p> <p>---<u>자치단체와 협의를</u>---</p> <p>※ 기관이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협의</p>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30조(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사람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한 사람이 그가 재직하는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에 관하여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